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자

- 서울특별시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2003.1.10) 및 동조례시행규칙(2003.1.15)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조례의 관련규정을 이에 맞도록 부서명칭, 직명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
- 서울시민대상조례
-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 서울특별시공인조례
-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3. 주요골자

가. 변경된 부서명칭과 직명정비

- 기획예산실→경영기획실, 시정기획관→정책기획관, 행정관리국장→행정국장, 건설안전관리본부→건설안전본부 등

나. 개정된 사무분장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 물품관리조례의 경우
 - 회계과장 → 총무과장
-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경우
 - 행정(2)부시장 → 행정(1)부시장
 -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 총무과장
- 공인조례의 경우
 - 총무과 → 민원과

4. 검토요지

- 지난 2003. 1. 10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관련 부서명칭, 직명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각호외의규정중 “행정(2)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하고, 동항 제1호중 “기획예산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시정기획관”을 “정책기획

관”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안전본부”로 한다.

제7조제5항중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월드컵경기장건설단 건축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설기획단 담당사무관”을 “총무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표창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중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6조(서울시민대상조례의 개정)서울시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문화관광국”을 “문화국”으로,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획예산실장·환경관리실장·교통관리실장·행정관리국장·건설국장”을 “경영기획실장·행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기획국장”으로 한다.

제3조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공인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중 “총무과”를 “민원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 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 공보관”을 “행정국장, 대변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2002.11.29)의 개정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시유재산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동조례시행규칙(2003.1.15)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명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인하(안 제22조)

(1)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5%를 연 4%로 인하하는 경우

-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